

하도급법 기본 교육

이론과 실무



| 목 차

- I. 하도급법 개관
-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V.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I. 하도급법 개관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규제 체계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 우선 적용

- ✓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적용이 배제됨

- 민사법의 특별법

- ✓ 하도급법상 지연 이자가 민·상법상 법정이자율보다 우선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등과의 관계 (하도급법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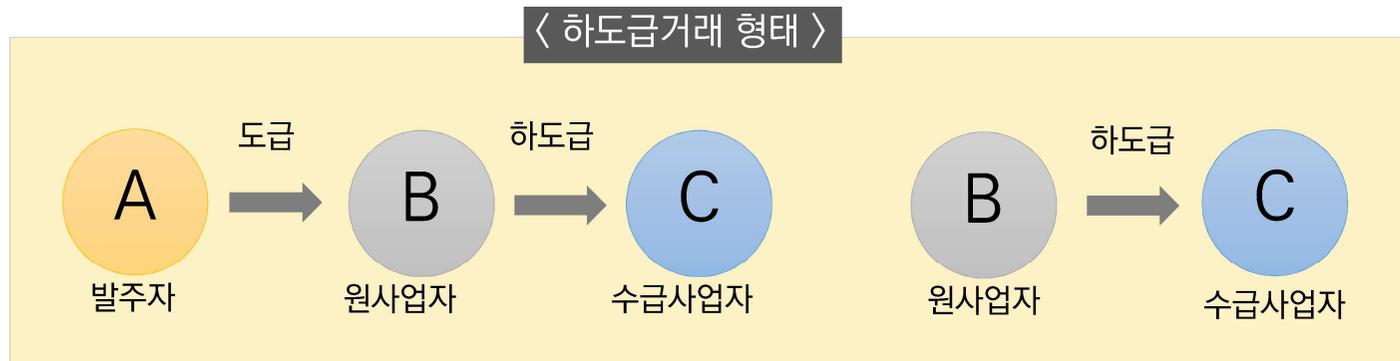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과 중복 적용

- ✓ 위 법의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법적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가공 포함),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법 제2조 제1항)
 - 구별 개념 : 도급, 매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위·수탁 거래
- 하도급거래 형태** 재위탁하는 ‘하도급관계’ 외에 ‘원도급관계’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임 (대법원 2001다27470 판결 등)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법 제2조 제2항, 제3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①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중소기업도 포함 ② 중소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초과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④ 대규모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 초과	①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충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② 중견기업 -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③ 중견기업 -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2배 미만

I.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법 제2조 제2항, 제3항) - 원사업자

✓ 원사업자의 5개 유형

-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 ②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③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 (원사업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⑤ 대규모 기업(연간매출액 2조 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제외 요건

- ①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30억 원 미만
- ②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 원 미만
- ③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 재하도급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위에 서게 됨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법 제2조 제2항, 제3항) -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의 4개 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주된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 충족 그리고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당해 기업의 최대 출자자이면서 보유 지분이 30% 이상이 아닐 것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조합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포함)
 -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2배 미만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법 제2조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수리위탁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위탁 - ① 특정 사양의 지정

-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4개 유형의 위탁 행위 규정: 원사업자가 **규·격품·질성능 등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그 조건대로 결과물을 납품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
- ✓ 특히,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상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위탁 O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목적물의 크기·색상·모양·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종류·물품의 강도·용도에 따른 성능 및 디자인 등을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먼저 시제품이나 여러 샘플을 제시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제조 방법·크기·색상 등을 제정하여 제작할 것을 주문한 경우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

위탁 X

- 위탁 대상 물품의 사양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사양을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물품을 생산한 다음 원사업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위탁 - ② 위탁 목적물의 전용 가능성

- ✓ 원사업자가 중간재 등의 제조를 위탁할 경우, 시장 수요 예측 등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탁 목적물의 사양을 특정하여 지정함
 - 위탁 목적물은 원사업자가 본래 의도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기 어려움
- ✓ 주문된 특정 사양에 따라 위탁 목적물을 생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동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생산된 위탁 목적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음 → 손해 위험 ↑
- ✓ 반면, 원사업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하지 않고 위탁하거나, 사양을 지정했더라도 범용 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하도급법상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 ↓

I.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간 (법 제23조)

- ✓ 거래 종료일(제조위탁의 경우 목적품 납품 또는 인도일)로부터 **3년 이내**
(단,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또는 분쟁조정신청 시 3년 경과해도 적용)
- ✓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법 개정 : 2018. 4. 17. 시행)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규제 내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금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원사업자 의무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발급 및 보존(3년) 의무 (제3조)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3조 6항) 선금금 지급의무 (제6조)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제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13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13조의2)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제15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제16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16조의2)
원사업자 금지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5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부당 반품의 금지 (제10조) 감액의 금지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제12조의3)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제17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18조) 보복조치 금지 (제19조)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발주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제14조) 	
수급사업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보존 의무 (제3조)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의칙 준수 (제21조 제1항) 건설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 (제13조의2)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규제 내용

- 하도급거래 진행 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계약 체결 단계 (4)

- 서면 발급 및 보존(3년) 의무 (제3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3조 6항)
- 부당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계약 이행 단계 (8)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5조)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제7조)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제9조)
- 부당 반품의 금지 (제10조)
- 감액의 금지 (제11조)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2)
- 건설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 (제13조의2)

I. 하도급법 개관

하도급법의 규제 내용

- 하도급거래 진행 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대금 지급 단계 (7)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13조)
- 선급금 지급의무 (제6조)
-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제15조)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제16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16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제17조)

전체 거래 과정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제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법 제3조)

-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제조 등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법정기재사항

- 목적물
-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의무발급서면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감액서면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검사결과 통지서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법 제3조)

-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위탁 작업의 내용, 대금, 위탁 일시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 확인 요청
- ✓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통지 및 회신 방법 : 내용증명우편 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도 가능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법 제3조)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명·기명날인·공인전자서명이 지연되는 경우 있음

관련 Issue : 서면 사후 발급, 법정 기재사항 누락

- ✓ 하도급 업무 시작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서명·기명날인·공인전자서명이 없는 계약서만을 발급한 경우 또는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
-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기명날인·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특약 금지 (법 제3조의 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 심사대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
(하도급거래 전제)
-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및 시행 중
- 관련 법령은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은 무효로 규정
 - ✓ 공공조달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 ✓ “이러한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특약 금지 (법 제3조의 4)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

-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특약 금지 (법 제3조의 4)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2 -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

- 다음 중 하나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법령 근거 원사업자 의무사항 관련 발생 비용
 - ② 원사업자 설계 변경 등 관련 발생 비용
 - ③ 원사업자 지시 등에 따른 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는 부분
 - ④ 법령, 계약 근거 원사업자 부담 하자 담보/ 손해배상책임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 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 ✓ (위법성 판단기준)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여부
 - ✓ (서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즉 3조 서면을 의미함
 - 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의 일부로 포함시킨 부속 서류를 의미함

부당 특약 예시

-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흙관)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3조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공사 또는 계약 사항 이외 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 ✓ (민원 처리와 관련된 비용)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민원, 용지 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위법성 판단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부당 특약 예시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
 - ✓ (입찰 내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목적물 등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는 품명, 물량, 규격, 수량, 단위 등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참가 예정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역서(명칭 여하 불문)를 작성하여 입찰시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그 내역서
 - ✓ (위법성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 수량, 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제외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

부당 특약 예시

-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 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 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 주요 자재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 강재(건설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 또는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관청으로부터의 건축 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수속, 각종 수검·협조 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행하고 그 소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 시 기성금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 검사를 위한 시험 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원사업자/발주자가 설계나 작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수급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 변경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무관)에 따른 재작업, 추가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원사업자 소속 현장 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 (ex. 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를 말함), 휴일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 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 없이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수급사업자가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증권상의 보증 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몇 년(예를 들어 1년)을 더 길게 산정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보수 비용의 몇 배(예를 들어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계약 기간 중 수해·눈 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기간 연장은 없다는 약정
- 전염병(예를 들어 조류독감)의 창궐 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 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ERP)을 제작하는 도중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시스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 (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반드시 견적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해야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 기준(예를 들어 토목 현장 6%, 건축 현장 4%)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 이행, 선금금 이행, 하자 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을 내야 한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 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 지연 및 공사 거부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
-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 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 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특약 심사지침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법 제4조)

- (법 제4조 제1항)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강요 행위 금지

❖ 일반적 금지 행위의 성립 요건

- ①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 ② 부당하게
- ③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 등에 대한 일반적 지급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 ④ 그와 같이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것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법 제4조)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2호)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 할당·삭감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4호) 기만적 대금 결정

✓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착오 유발,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대금 결정

(5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

(6호) 수의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대금 결정

(7호) 최저가 입찰금액 미만으로 대금 결정

(8호)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리한 대금 결정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일률적인 비율 예시

-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한 종전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거래 규모별, 경영 상황 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 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 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 가격 또는 견적 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 예시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 결정이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 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2호)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 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4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 계획 또는 신규 수주 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5호)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 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 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5호)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 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 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 인하로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6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7호)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예시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7호)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 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II.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법 제4조 제2항) 다음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

(제8호)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 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Ⅲ.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5조)

- 원사업자가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정당한 사유** 발주자,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등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

🏠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함
- **정당한 사유**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아니할 때,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법 제9조)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함

✓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 거부·지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부당한 위탁취소 예시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되는 경우)
 -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예시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예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 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 농성도 정상적인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예시

- 수급사업자가 부도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 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의 예시

-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며칠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해당 수급사업자가 자재 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미지급한 금액이 원사업자와의 위탁계약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다른 사업자의 신형 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 계약 서면에 위탁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서면으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 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반품 금지 (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목적물 등의 반품이 금지됨

하도급법 제10조 제2항 -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유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반품행위의 예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가·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가·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부당한 반품행위의 예시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감액 금지 (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적으로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
-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사전에 서면(감액 사유 및 기준, 대상 물량, 감액 금액, 감액 방법 등)을 교부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부당 감액으로 간주되는 유형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관련 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정당한 사유의 예시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 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1호)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종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 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2호)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호)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Ⅲ.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5호)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6호)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7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 손실을 공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법 제11조 제2항) 다음 행위는 금지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예시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금지 (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하는 경우 가능)
- ✓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이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나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 (예시 : 작업공정도, 설계도면, 회로도, 운용 매뉴얼, 작업표준서(지시서), 시방서, 소스코드 등)

정당한 사유 예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 **사전에 서면**(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지급방법 등)을 교부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을 담은 계약 체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함
 -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
 -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 X

기술자료 예시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함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기술자료 예시

- 공정도, 공정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Ⅲ.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함
 -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서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경우
 - ✓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됨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 시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 (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금지 (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금지
 - ✓ **유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 (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부정할 수단을 통해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
 -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침해 여부 위주로 판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침해

-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는 행위 금지
 - ✓ 2018. 4. 17. 법 개정 (제12조의3 제3항)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 '유출'(제공)하는 행위도 별도 위법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심사지침 – 위법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

- 거래 **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심사지침 – 위법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

-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 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 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 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심사지침 – 위법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

- 거래 단계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 하는 경우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유용행위 심사지침 – 위법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

- 거래 이후 단계

〈예시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기술 보호 관련 법률 비교

법률	제도	적용 범위	특징
하도급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하도급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교부 의무화 유용시 3배 배상
상생협력법	기술자료임치제도	수탁 또는 위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임치 기술 탈취 금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기술 보호 지원, 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 조사·시정 권고 분쟁 조정·중재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영업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형사 구제 영업비밀 보호사업
산기법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등 금지	산업기술, 국가 핵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수출시 승인·신고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IP 지원 등	지식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함
발명진흥법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권리 승계와 개발자 직무 보상
특허법	특허권 부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심사·공개 등록 특허기술 보호
형법	절도죄, 업무상배임·횡령죄, 증거인멸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벌을 통한 간접적 보호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됨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기술수출 제한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전속거래 강요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법 제18조)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요구 금지 경영상 정보의 종류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가격 등 납품 조건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III.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 보복조치 금지 (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행위
 -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 금지 (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후 다시 회수, 공제하는 행위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선급금의 지급의무 (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15일 초과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지급 의무 있음
 - ✓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한 경우,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 (미지정 시 비율 지급)

🏠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법 제15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수령일**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연장 가능한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 등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법정지급기일(60일, 기성금 등 수령 시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지급의무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법 제13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 지급 의무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 0.075 * 지연일수 / 365일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 기일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 지급 의무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법 제14조)

- **발주자**는 아래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위탁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법 제14조)

▪ 효과

- ✓ 직접지급요건 발생시까지 수행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소멸
- ✓ 미공제금액이 있으면 상계, 총당함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압류, 가압류

- ✓ 직접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효력 없음(2009가합37669),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의 압류, 가압류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 가능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법 제16조)

▪ 발주자 증액분 증액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 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의무)

✓ 증액 요건 : ① 설계 변경,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②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증액 방법 :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

✓ 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재량)

▪ 통지 의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법 제16조)

- 증/감액 시기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 지급
- 어음할인료 등 지급 의무 :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연 7.5%**) 결제수수료 지급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함**
 -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cf) 공급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하는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 공급원가나 그 외 비용의 하락을 예상하여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물량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임**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법 제16조의2)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정 신청에 대한 협의 의무**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10% 이상 변동 등) 이상 변동되고,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정 범위의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음**
 - ✓ 조합과 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견기업
 - ✓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해야 함
 - ✓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 조합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함
 - ✓ 원사업자에게 이미 조정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를 신청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 ✓ 원사업자에게 이미 조정 신청한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를 신청한 경우 조합의 협의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 ✓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 중단 결의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사업 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법 제16조의2)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수급사업자나 원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수급사업자나 조합, 중소기업중앙회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가 안된 경우**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IV.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규제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규정 삭제)
 - ✓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하기 전 원사업자는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자료를 제시해야 함
 - ✓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대물변제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1다27470 판결) ← 개정 전 규정 적용 판례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개관

<p>행정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명령 등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 2억 원 이하 자료 제출 거부·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조사 거부, 방해 : 사업자 2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 제재〉 명단 공표 : 직전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입찰 참가 제한 요청 : 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p>형사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위반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보복 조치 금지 위반 : 3억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부당 경영 간섭, 탈법 행위 :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원칙적 고발 : 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양벌 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p>민사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손해배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보복 조치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과징금

과징금 부과 대상

- ✓ 원사업자(각종 의무 위반 시), 발주자(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위반 시), 수급사업자(서류 보존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방식

- ✓ 제1단계 :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다음 사항 종합 고려)
 - 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해사업자 수, 피해금액, 위반행위 수, 법 위반 전력
- ✓ 제2단계 : 기본 산정 기준의 결정 - “하도급대금의 2배 X 위반 금액 비율 X 과징금 부과 기준율”
- ✓ 제3단계 : 1차 조정 - 위반 횟수 및 피해 사업자 수가 많은 경우 가중
- ✓ 제4단계 : 2차 조정 - 보복 조치의 경우 가중, 자진시정·조사 협력 시 감경
- ✓ 제5단계 : 부과 과징금 결정 (다음 사항 종합 고려 감경)
 -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경제 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이 되는 법 위반 행위

형벌	위반 행위 유형 (법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조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제3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5조) 선금금 지급 의무 (제6조)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제7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제8조) 목적물 검사 의무 (제9조) 부당 반품의 금지 (제10조) 감액 금지 (제11조)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건설하도급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제13조의2) 관세환급액 지급 의무 (제15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16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17조)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거부 (제16조의2 제7항)
3억 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9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불이행, 경영간섭, 탈법행위 위반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민사적 제재

- 하도급법 제35조 :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 ✓ 당사자적격 :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

cf. 수급사업자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 민법 제750조의 청구권 행사

- ✓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존재 : 원고 입증

cf.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위법성 인정,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 민사소송에서 법원 구속 X, 사실상 추정예 그침

-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입증 : 원고 입증

- 손해액인정제도(법 제35조 제4항) :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可

- 손해의 3배 배상(법 제35조 제2, 3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6개 유형의 위반 행위

→ 원사업자가 실손해배상이 아니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민사적 제재

■ 인과관계

- ✓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 要 →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적 인과관계를 넘어, 경험칙과 이론상 문제된 것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범위 내에서만 인과관계 인정

■ 고의·과실

- ✓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인 **원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법 제35조 제1항 단서)
- cf.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 입증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그 법적 성격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일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선택적으로 행사** 可 (소송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첩 행사 不可)
-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 소멸 시효** 적용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

V.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 하도급법 위반 계약의 효력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4항은 부당한 공동 행위의 약정에 대해 사법상 무효로 규정
- 하도급법의 경우 위반 계약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하도급법 제11조(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금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 했어도, 반드시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1다27470 판결 등)
- 결론 : 하도급법 위반 계약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행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음.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Ⅵ.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7. 보도자료 발표 → 11. 8.부터 11. 28.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①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

< 개정 전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 비교 >

연행	하도급·가맹	유통	대리점
현행	피해액 모두 구제 또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20 ~ 30%)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 또는 효과 상당부분 제거 (10 ~ 2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실질적으로 제거 (20 ~ 30%) 상당부분 제거 (10 ~ 20%)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 (10 ~ 20%)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0~10%)
개정안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30 ~ 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10 ~ 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7. 보도자료 발표 → 11. 8.부터 11. 28.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②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 * 현행 10억 원 → 20억 원
- ✓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 1. 12.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8. 25.~10. 4.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됨
- ✓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
 - *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 10억→20억 원
 - *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 6억→9억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5. 보도자료 발표 → 11. 15.부터 12. 5.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①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함
- ✓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

$$\text{연동계약 체결비율} = \frac{\text{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text{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times 100$$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5. 보도자료 발표 → 11. 15.부터 12. 5.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②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 ✓ ‘대금인상 실적’에는 (i)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 (ii) 수급사업자의 조정요청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 포함
- ✓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

$$\text{대금 인상실적} = \frac{\text{기준연도에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총액}}{\text{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times 100$$

- ✓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원사업자에 **최고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함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5. 보도자료 발표 → 11. 15.부터 12. 5.까지 20일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③ 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

✓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 1)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 2)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3. 보도자료 발표 → 11. 14.부터 12. 5.까지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 ✓ (공시의무사항)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내년부터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 공시대상원사업자: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인 자
 - 지급수단 :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 지급기간 :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 분쟁조정기구 :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
- ✓ (공시빈도 및 시기)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 30., 12. 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 ✓ (공시절차 및 양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

VI. 최근 법 또는 제도 개정 사항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 11. 13. 보도자료 발표 → 11. 14.부터 12. 5.까지 행정예고)

■ 주요 내용 ②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함
- ✓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 :
 - (가중사유)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함
 -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 (감경사유)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함
 - ①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감경
 - ③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 ④ 30일 이하인 경우 20% 감경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